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뇌혈관질환⑨

뇌경색증

- 서울고법 1993. 9. 23. 선고, 93구5859판결
- 법관
- 원심판결

- 참조조문 산재법 제3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누476판결

판결요지

상당한 과로사실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이 업무 수행중 갑자기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하여도 특이한 사망원인 즉 업무의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밝혀 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과로에 의한 업무상재해라 추정되어야 한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피재근로자 망 ○○○(이하 피재라 한다) 신반포 수원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

하던 중 1992. 4. 25. 04:00경 101동경비실에서 구토와 두통증세를 일으켜 지방공사 경기도 수원의료원을 거쳐 성빈센트병원에서 뇌혈전증, 뇌간경색증으로 요양중 같은달 28. 15:55 호흡부전,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피재자의 처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



외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병에 의한 업무의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재자 경비업무수행중 연탄가스중독을 일으켰고, 뇌혈전증 및 뇌간경색증은 24시간 계속되는 경비업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한 업무상 재해인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고, 피고는 경비원의 직무는 과로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뇌경색증에 의한 사망은 업무와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사실관계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6호증의 기재들과 증인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재자는 1986. 11 이래 사망시까지 5년6개월간을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경비원의 직무내용은 아파트 입주자 및 출입자 확인통제, 가구별 방법순찰, 주차안내, 주차장관리, 주변청소, 환경정리, 입주자의 개인적 부탁업무 등 업무내용이 잡다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이다.

(2) 피재자는 12층 구조의 아파트 건물 입주자 220가구를 위한 2곳의 경비실중 한 곳의 경비원으로 100여 가구를 담당하여 업무가 많은 편이며, 08:00까지 격일제 근무 형태이므로, 24시간 연속 근무에 따른 피로가 심하였고, 24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안전, 건강 등에 문제가 지적되어 피재자의 사망후 관계당국의 지시에 따라 12시간 주야간 교대제로 변경되었다.

(3) 근무장소인 경비실의 구조는 1평 남짓한 사무실에 난방용 연탄 난로 등 각종 설비물로 인하여 휴식시간에도 충분한 휴식이 불가능한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

(4) 재해경위는 피재자는 재해당일 08:00경 출근하여 통상업무를 하던 중 다음날인 25. 04:00경 경비실에서 갑자기 심한 구토와 두통증세를 일으켜 수원의료원을 거쳐 성빈센트병원에서 요양중 3일만에 사망하였다.

(5) 최초 피재자 요양했던 수원의료원의 소견은 1992. 4. 25. 06:30경 응급실에 도착당시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여 대증적 가료 후 타병원 전원시켰다는 것이고, 성빈센트병원은 근무중 상병명 뇌혈전증, 뇌간경색증의 질환이 발생하여 심각한 뇌중추 손상 및 호흡기 중추의 손상으로 집중적인 원인치료 및 가료가 필요하고 현재 거의 모든 뇌기능 손실 및 심기능 부전 상태인 것으로 초진 소견을 내렸고,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뇌경색증으로 진단하였고, 연탄가

스 중독의 의증은 없었다.

(6) 뇌경색증은 뇌혈관이 고지혈증, 혈전, 색전 등에 의하여 막힘으로써 일어나는 괴사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연령(50세 이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근경색증, 부정맥, 혈액질환 등의 기존 질환에 기초하여 유발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와 뇌경색증과의 직접적인 관련여부는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나(관련없다는 것이 통설) 과로와 긴장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누적은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고 뇌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기준증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의학상 널리 인정되고 있다.

(7) 피재자는 사망당시 53세의 나이로 평소에 별다른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으로, 특히 혈압은 정상인 사람이며(갑제3, 7호증), 건강에 장해가 되는 낙연과 과다한 음주도 아니하였고, 연령과 과로 이외에 피재자의 급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을 줄 수 있는 특이한 요인이 되는 기존증도 없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재자는 연령, 근무조건, 근로형태에서 상당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압박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그외에 사망의 원인이 된 뇌경색증을 유발시킬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중 갑자기 뇌경색증을 일으켜 사망하였고, 특이한 사망원인 즉 업무외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추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